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가단510800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손성락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조합

소송대리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탁

4. E

피고 1, 2,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완

변론 종결 2024. 7. 4.

판결 선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475,296원 및 그 중 139,340,130원에 대하여 2024. 2. 8.부터 2024. 4. 2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2023. 10.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23. 10. 19. 접수 제7597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 A, B,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조합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 B, E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1, 2항과 같다.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조합 사이에 체결된 2023. 9. 2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조합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23. 9. 26. 접수 제7122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와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23. 10. 26.경 대출금연체로 인하여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될 당시인 2023. 9. 26. 및 2023. 10. 19.경에는 이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 개연성은 곧 현실화 되어 피고 회사는 결국 도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악의 추정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E가 2023. 9. 26.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이라 한다)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대한 담보 제공의 의사로 같은 날 피고 C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23. 9. 26. 접수 제71222호로 피고 C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어 2024. 10. 12. 피고 E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23. 10. 19. 접수 제7597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위와 같은 피고 C조합 및 E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설정을 받은 위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다.

라. 선의 주장

1) 먼저 피고 E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 C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피고 B에게 빌려주고 이를 담보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의항변을 하나, 위와 같은 경위만으로는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C조합은, 피고 B와 피고 C조합은 단순 담보제공자와 금융기관 대출자의 관계로 피고 B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 B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와 피고 C조합은 단순 담보제공자와 금융기관 대출자의 지위 관계로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인 점, 피고 C조합은 대출메뉴얼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B의 국세, 지방세 체납 등 체크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구상채무를 지게되어 피고 C조합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 C조합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 B와 E 사이의 위 2024. 10.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E는 피고 B에게 자신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 및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회기

별지